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정 2020. 6. 5 규정 제20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상징물”이란 공단을 상징하는 심벌마크(symbol mark), 기(旗), 문장(紋章)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공단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CI) : 별표 1
2. 공단기 : 별표 2
3. 문장 : 별표 3

제4조(심벌마크) ① 심벌마크의 모양 등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문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심벌마크는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이사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사원증
2. 이사장 명의로 각종 공공시설 관리 물자
3. 이사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및 부상품 등
4.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물자 등

제5조(공단기) ① 공단기의 모양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공단기는 공단의 공식행사에 게양하고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연중 게양한다.

제6조(문장) ① 문장의 모양 등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이사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사원증
2. 이사장 명의의 각종 공공시설 관리 물자
3. 이사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및 부상품 등
4.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물자 등

제7조(상징물의 변경) 상징물의 형태, 색상, 조합 방법 등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심벌마크(CI)(제3조, 제4조 관련)

□ 심벌마크 설명

- 심벌마크는 양주시 영문 YANGJU 머리글자인 “Y”, “J”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Y”는 사람과 소나무(양주 시목)를 동시에 상징하며 뻗어가는 기상을 내포하고 있으며, “J”는 “Y”와 어울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의미한다. “Y”와 “J”의 머리 부분의 촛불 문양은 발전을 상징하고 있으며, 자연과 사람이 하나로 어울려 발전하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담고, 자연 친화적인 포근함과 정적이며 고요한 이미지를 가진다.

□ 심벌마크 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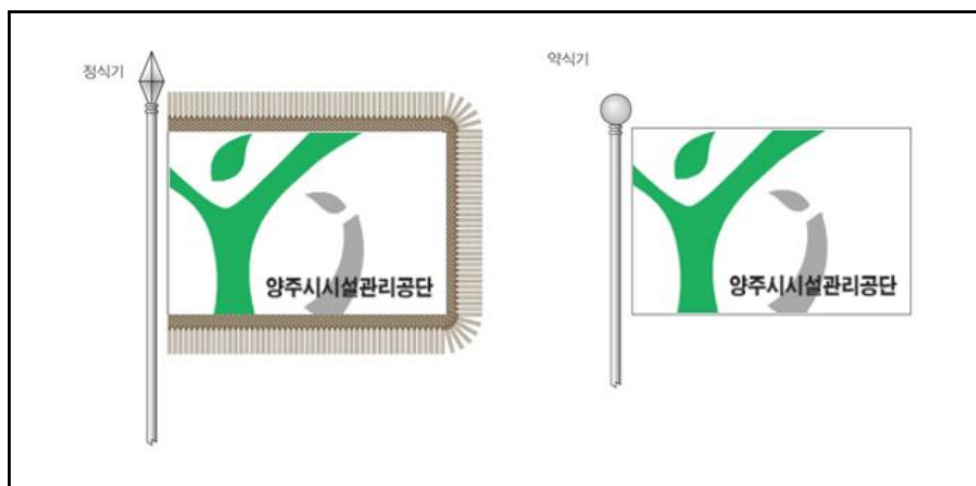
- 심벌마크는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절한 색상과 동일한 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문자를 조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양주시시설관리공단 공단기(제3조, 제5조 관련)

□ 정식기, 약식기는 공단을 상징하는 대표성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상징기로 정식기는 공식적인 행사나 공단을 대표하는 장소에 놓이며, 약식기는 각종 행사의 옥외 구조물에 계양한다.

□ 공단기 기본형



○ 공단기는 깃 면의 가로와 세로는 3 : 2의 비례로 하며, 규격은 1350mm×900mm를 기본형으로 한다. 공단기의 색상은 바탕은 백색, 마크는 (좌측)녹색과 (우측)회색으로 하며, 문자는 흑색으로 한다.

○ 공단기는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정한 색상과 동일한 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 한 규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별표 3]

양주시시설관리공단 문장(제3조, 제6조 관련)

□ 문장 기본형



□ 문장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정한 색상과 동일한 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최소 크기 10mm)

